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82

발의연월일: 2024. 7. 2.

발 의 자:윤재옥·백종헌·정희용

이인선 · 서천호 · 박성민

엄태영 · 김예지 · 김 건

김태호 • 박정훈 • 정성국

구자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영향에 대한 검토 절차가 없는 실정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검토 절차의 부재는 무분별한 규제입법으로 이어져, 정부의 규제 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활기와 혁신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옴.

이에 의원의 법률안 발의 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담은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과 의안심사의 질을 제고하고자함(안 제79조의4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9조의4(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서의 제출) ① 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법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예측 분석
 - 2.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 ·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3.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설정 필요성
 - 4. 그 외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임법영향분석서의 작성을 국회입법조사처에 요구하고,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사무처와 함께 입법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한다.
 - ③ 의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 영향분석요구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입법영향분석 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79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법률안을 심사할 때에 입법영향분석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입법영향분석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향분석서의 제출) ① 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하는 규제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를 내용으로 하 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된 입법영향분석서를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예측 분석 2.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소요 3.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준 토기한의 설정 필요성 4. 그 외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임법 영향분석서의 작성을 국회입법		제79조의4(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서의 제출) ① 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법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인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예측 분석 2.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소요 3.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설정 필요성 4. 그 외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처는 국회사무처와 함께 입법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요 구한 의원에게 제출한다.

③ 의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영향분석요구서로 갈음하 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입 법영향분석서의 제출에 관하여 는 제79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법 률안을 심사할 때에 입법영향 분석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입법영향분석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 다.